

2022. 09. 0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9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2133-6575
청년권익팀장	조원희	2133-6587
담 당 자	김민주	2133-6589
	안태건	2133-6582
관련 홈페이지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2쪽

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광역 지자체 최초

- 광역 지자체 최초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시작...올해 이사한 만19세~39세 5천 명
- 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
-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 청년, 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9.6.~26. 온라인 신청

-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생애 1회)
-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1/5 정도로 짧다.
-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거 점유 형태 >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계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 연세		
청년1인가구	4.0	27.6	65.8	58.1	7.4	0.3	2.6	100
일반가구	42.2	26.2	28.5	25.1	3.3	0.1	3.2	100

* 사글세 또는 연세 : 셋집을 얻을 때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거주 기간 > (단위 %, 년)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평균 거주기간
청년1인가구	66.6	28.6	4.1	0.8	100	1.4
일반가구	29.2	28.2	18.8	23.7	100	6.2

<출처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1년 발행, 연구수행기관 서울연구원>

- 9월 6일(화)~26일(월)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 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 신청은 9.6.(화) 9시~ 9.26.(월) 18시까지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연락하면 된다.

□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					
구간	임차보증금(천원)	월세 (40만원 초과부터)	구간	임차보증금(천원)	월세 (40만원 초과부터)
1	0~3,200 미만	55만원 이하	9	25,600~28,800 미만	47만원 이하
2	3,200~6,400 미만	54만원 이하	10	28,800~32,000 미만	46만원 이하
3	6,400~9,600 미만	53만원 이하	11	32,000~35,200 미만	45만원 이하
4	9,600~12,800 미만	52만원 이하	12	35,200~38,400 미만	44만원 이하
5	12,800~16,000 미만	51만원 이하	13	38,400~41,600 미만	43만원 이하
6	16,000~19,200 미만	50만원 이하	14	41,600~44,800 미만	42만원 이하
7	19,200~22,400 미만	49만원 이하	15	44,800~48,000 미만	41만원 이하
8	22,400~25,600 미만	48만원 이하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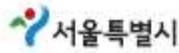
○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14㎡),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순 우선 선정
-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인이 부정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잡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붙임 : 1.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 Q&A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생애 1회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
 *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h4>■ 지원요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만 19~39세 (1982. 1. 1. ~ 2003. 12. 31. 출생한 청년) 주소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가족(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h4>■ 신청기간</h4> <p>2022. 9. 6(화) ~ 9. 26(월)</p> <h4>■ 신청방법</h4> <p>청년몽땅정보통 (http://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 이사비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p> <h4>■ 심사결과</h4> <p>일시 : 2022년 11월 중</p> <h4>■ 문의처</h4> <p>청년이사비지원 콜센터 1877-9358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p>
<p>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http://youth.seoul.go.kr) 공고문을 확인하세요</p>	

1.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 청년 이사비 지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만19세~39세) 대상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 (주소)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신청일 직전 1개월('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¹⁾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거주)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다만,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²⁾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 보증금 3백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

구간	임차보증금(천원)	월세 (40만원 초과부터)	구간	임차보증금(천원)	월세 (40만원 초과부터)
1	0~3,200 미만	55만원 이하	9	25,600~28,800 미만	47만원 이하
2	3,200~6,400 미만	54만원 이하	10	28,800~32,000 미만	46만원 이하
3	6,400~9,600 미만	53만원 이하	11	32,000~35,200 미만	45만원 이하
4	9,600~12,800 미만	52만원 이하	12	35,200~38,400 미만	44만원 이하
5	12,800~16,000 미만	51만원 이하	13	38,400~41,600 미만	43만원 이하
6	16,000~19,200 미만	50만원 이하	14	41,600~44,800 미만	42만원 이하
7	19,200~22,400 미만	49만원 이하	15	44,800~48,000 미만	41만원 이하
8	22,400~25,600 미만	48만원 이하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의 기준은?

- 청년가구 내 부모, 형제, 친구 등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청년 본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사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이사에 실제 소용된 비용이 포함 됩니다
- 다만, 대중교통, 택배 서비스 등을 이용한 이사비용,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4. 신청 제외 대상자가 있나요?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소유자, 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다른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청년 이사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 다만,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이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7. 신청 기간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은 22년 9월 6일(화) 9시부터 22년 9월 26일(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공고예정)
-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방문접수 불가

8.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등록 방법은?

- 이사비 지원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 확인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설 명
필 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서식1] 입실확인서 붙임 참고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서식1) 실거주 확인서 붙임 참고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인정 - ②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등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2022년도 기준)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 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2] 보호종료 확인서 붙임 참고

- 모든 제출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첨부) 해야 하며 사진 촬영 파일 및 이미지 파일도 제출 가능하나 압축 파일은 반드시 압축 해제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함

9.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별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심사결과 결정·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10.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로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 확인에 필요한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이사비 지원’ 공고문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11. 이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좌이체 내역서로 이사비 신청이 가능하나, 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에 대한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에 이사업체명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계좌이체 내역의 받는 분 성함과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함이 일치하여야 함)

13.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자격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지원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

구 분	정 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0호)에 따른 가구원 수별 총 주거 면적 미만인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가구원 수 (인)</th> <th>총 주거 면적 (㎡)</th> </tr> </thead> <tbody> <tr><td>1</td><td>14</td></tr> <tr><td>2</td><td>26</td></tr> <tr><td>3</td><td>36</td></tr> <tr><td>4</td><td>43</td></tr> <tr><td>5</td><td>46</td></tr> <tr><td>6</td><td>55</td></tr> </tbody> </table>	가구원 수 (인)	총 주거 면적 (㎡)	1	14	2	26	3	36	4	43	5	46	6	55
가구원 수 (인)	총 주거 면적 (㎡)														
1	14														
2	26														
3	36														
4	43														
5	46														
6	55														
옥탑방·(반)지하·고시원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4. 신청인 청년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며, 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